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2-21호

「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2 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2년 9월 6일

고 흥 군 의 회 의



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제안이유

- 고흥군의회 의원의 신분증 규정에 있어 내용이 중복된 항을 삭제하고 신분증 발급에 직인날인 규정 및 신분증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직접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 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1항(신분증규격, 서식 및 색상)
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, 의회마크,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

첨부 하되, 그 규격,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른 별표와 같다른 한다.

○ 안 제3조제2항(신분증규격, 서식 및 색상)

신분증 후면 중앙에 의회마크를 표시하되, 그 규격과 색상은 별표 2와 같다른 - 삭제

○ 안 제3조제3항(신분증규격, 서식 및 색상)

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같다른할 수 있다 - 신설

○ 안 제3조제4항(신분증규격, 서식 및 색상)

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직접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「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신설

3. 개정조례안: 별도 붙임

4. 입법예고기간 : 2022. 9. 6. ~ 2022. 9. 13.(8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하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
2) 전화 : 061-830-6065, 팩스 : 061-8305595

붙임 1. 고흥군의회의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 1부.

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규칙 제 호

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별표 1과 같다”를 “별표와 같다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삭제 한다.

제3조제3항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를 신설 한다.

제3조제4항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직접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「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」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신설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신분증 규격, 제식 및 색상)</p> <p>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, 의회마크,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, 그 규격, 제식 및 기재사항은 <u>별표 1과 같다.</u></p> <p>② <u>신분증 하면 중앙에 의회 마크를 표시하되, 그 규격과 색상은 별표 2와 같다</u></p>	<p>제3조(신분증 규격, 제식 및 색상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별표와</p> <p>---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③ <u>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같음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직접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「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</p>

[붙임 3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 _____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 _____

○ 전 화 번 호 : _____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